

속초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물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97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 제안이유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반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익성을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물균일과세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여 제기능을 다할수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저 함.

□ 주요골자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의거 면허또는 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물균일과세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정함.

□ 참고사항

- 지방세(종합토지세)법 제234조의15제1,2,3항(과세표준)및 같은법 제234조의16제1,2항(세율)

□ 첨부

-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물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준칙1부
- 지방세법(종합토지세) 관련법규 사본1부 글.

승차세액면치환과 면제에 관한 종합 특례세법규율과 세액과한조치

제1조(목적) 이 조는 여객자동차라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특치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대상) 종합특치세 과세기준을 현재 여객자동차라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라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특치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경감신청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특치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불균일과세대상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다.
시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차(시행일) 이 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는 다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여객터미널부지확장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93종합토지 세액	조세제정시가 면세액(50%)
계	5필지		3,242	2,000,250	1,000,110
강원은수 140111- 0000105	동명 261-83	대	512	303,000	151,500
동해상사 141111- 0000229	동명 261-82	"	383	199,910	99,950
강원여객 141111- 0000245	동명 261-85	"	298	192,090	96,040
금강은수 145211- 0000017	동명 261-16	"	1,165	1,022,080	511,040
김흥길 250416- 1273311	동명 261-84 (강원흥 업임대)	"	684	283,170	141,580